

[일련번호 : 6]

양 천 구 시 정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♡♡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♡♡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어울림사랑방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은 ‘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2(아래)’와 같다.

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 비고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| ① 급식비 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의 급량비 금액을 준용하여 상한액으로 정한다. ② 활동용품비 등 | “급식비” 지급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|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♣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*** ** 자원봉사자에게 1일 4시간 이상 참여시 급량비 금액을 준용하여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나, 자원봉사자 *** 외 4명에게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1,144,000원을 과다지급하였다.

[표]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부적정 내역

| 연번 | 지급월 | 대상자 | 봉사일시 | 지급금액(원) | 지적사항 |
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 | 2023.7 | | 7.14 ~ 7.31. (4시간이상 0일) | 48,000 | 급식비 48,000원 과다 지급 |
| 2 | | | 7.14 ~ 7.31. (4시간이상 12일) | 160,000 | 급식비 64,000원 과다 지급 |
| 3 | | | 7.18. ~ 7.28. (4시간이상 4일) | 56,000 | 급식비 24,000원 과다 지급 |
| 4 | | | 7.17. ~ 7.28. (4시간이상 3일) | 40,000 | 급식비 16,000원 과다 지급 |
| 5 | 2023.8. | | 8.2. ~ 8.31. (4시간이상 0일) | 64,000 | 급식비 64,000원 과다 지급 |
| 6 | | | 8.1. ~ 8.31. (4시간이상 17일) | 208,000 | 급식비 72,000원 과다 지급 |
| 7 | | | 8.2. ~ 8.31. (4시간이상 6일) | 88,000 | 급식비 40,000원 과다 지급 |
| 8 | 2023.9. | | 9.1. ~ 9.27. (4시간이상 18일) | 272,000 | 급식비 128,000원 과다 지급 |
| 9 | 2023.10. | | 10.4. ~ 10.31. (4시간이상 19일) | 296,000 | 급식비 144,000원 과다 지급 |
| 10 | 2023.11. | | 11.1. ~ 11.30. (4시간이상 21일) | 336,000 | 급식비 168,000원 과다 지급 |
| 11 | | | 11.1. ~ 11.30. (4시간이상 7일) | 112,000 | 급식비 56,000원 과다 지급 |
| 12 | 2023.12. | | 12.1. ~ 12.29. (4시간이상 20일) | 320,000 | 급식비 160,000원 과다 지급 |
| 13 | | | 12.1. ~ 12.29. (4시간이상 20일) | 320,000 | 급식비 160,000원 과다 지급 |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♣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♣♣동장은

어울림사랑방 자원봉사자 장미순 외 3명에게 과다지급한 자원봉사자 급식비 총 1,144,00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